

TBT 중앙사무국 1주년 보고서(3)



정기원 팀장
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과

IV. 기업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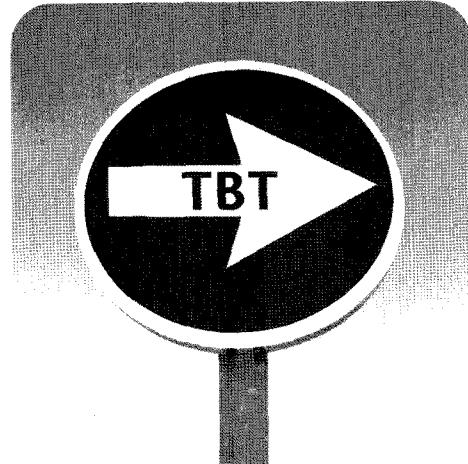
4.1 설명회

4.1.1 미국 및 사우디 신설 TBT 설명회

기술표준원은 미국 및 사우디에서 신규로 시행하는 기술규제에 대한 설명회를 '08.11.11(화) 14시부터 실시하였다. 미국정부가 “2008 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에 근거해 '08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하는 12세 이하 어린이용 제품에 대한 강제적인 사전 인증제도 및 사우디아라비아의 신규 적합성 인증제도(CoC)의 시행으로 관련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동 제도의 개요 및 국가적 대응방안 등을 설명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였다. 동 설명회에는 (주)KCC, 지구화학(주) 등에서 15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이들의 주요 관심사항은 어린이용 제품의 정의부분으로 사실상 어린이용품의 한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수출시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한 바였다. 미국측 기준에 따르면, 어린이용품은 통상적으로 12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도록 의도된 소비제품으로 단순한 원구나 유아용품에 한정하는 것이 아닌 전 소비제품 대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가진다. 또한 의류 및 신발 등의 경우도 12세 이하 어린이용과 성인용의 구분이 없을 수도 있다. 따라서 어린이가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면 인증을 받아서 수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사우디의 경우, 신규 인증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통관시 부분적으로 기존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수출 기업 및 사우디측 바이어들도 기존제도를 따르는 경우가 있으며, 사우디 정부의 신규 인증에서는 전 공산품을 대상으로 인증을 요구함에 따라 기준이 없는 품목의 경우, 인증기관이 적절한 국제규격 등으로 대체하여 평가하여야 하는 문제점 등이 따랐다.



기술표준원은 이와 같은 미국과 사우디의 신규 인증 제도에 대응하여, 미국 소비제품안전위원회(CPSC)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KOLAS 시험기관을 지정하여,

현재 미국으로 수출하는 어린이용 제품의 인증과 관련한 각종 시험을 국내 KOLAS 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이를 설명회 시간에 충분히 기업에 전달하고 수출 전 인증을 받도록 당부하였다. 또한 사우디 적합성 인증제도와 관련하여, 기술표준원은 사우디표준청(SASO)과 상호인정협약(MRA)을 맺고 국내 시험인증기관에서 사우디가 요구하는 수출품 적합성 평가 후 인증서를 발급하는데 합의하였다. 이러한 협약에 근거하여 기술표준원은 사우디 수출품 인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16개 시험인증기관을 지정하고 운영중이며, 이에 관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였다.

4.1.2 제1회 TBT 워크숍

‘08년 12월 17일, TBT 중앙사무국은 제1회 TBT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TBT 중앙사무국 개소 이후 신규 해외규제들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고심해온 TBT 중앙사무국은 각 기업과 업종단체, TBT 운영위원회, 실무위원회, 연구회 등의 TBT 전문가들과 함께 향후 정부 차원의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무역기술장벽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강화되고 있는 추세로, 세계 각국이 도입하고 있는 신규 무역기술장벽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 수출업체의 대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WTO에 통보되는 신규 TBT 통보문건은 ‘08년도에 1,300건에 달하여, ‘07년 대비 30% 증가를 보였다.

수입 규제와 더불어 통관절차·원산지 규정 같은 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무역장벽에 비해 TBT는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제품시험인증, 국가정책변화에 따른 기술기준 및 표준의 변경 등 기술적 내용이 주가 되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대응이 쉽지 않다. 또한, 기업도 마찰이 생겼을 때 전통적인 무역장벽에 비해 더욱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게 된다. 특히 일반무역장벽은 WTO가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지만 TBT는 현실적으로 무역장벽으로 분류되지 않아 국제기구의 특별한 통제가 어렵고 자국의 현실적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는 부분으로, 중국·인도·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개발도상국은 물론이고 미국 등 선진국도 소비자 안전과 환경보호와 같은 표면적 이유를 내세우며 자국 산업의 보호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미국은 '08년 8월 '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을 만들어 11월부터 제조 또는 생산된 12세 이하 어린이용 제품에 제3자 적합성인증을 의무화했고, 사우디아라비아도 모든 수입제품에 수출국 정부가 인정한 기관에서 발행한 적합성인증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였다. 워크숍에 참석한 각 분야 전문가들은 TBT 대응을 위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정부와 TBT 극복 협력방안"라는 주제 하에 고려대학교 강병구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패널토론을 하였다. 참석자들은 대부분 TBT의 중요성에 대해 재차 강조하였고, 신속한 무역장벽 대응체계와 중장기 대응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워크숍에서 논의된 의견들은 '09년 업무계획에 반영되었고 중장기 TBT 대응체계를 확립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4.1.3 기술규제 최신동향 설명회

TBT 중앙사무국은 수출기업에 환경 등 기술규제의 최신 동향을 전달하기 위한 설명회를 '09년 4월 23일 무역협회 5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08년 9월 발족한 TBT 중앙사무국은, 최근 범세계적인 경제위기에 따라 각국이 자국산업 보호를 위하여 기술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최신 정보를 입수하여 기업에 맞춤형으로 전달하는 한편, WTO/TBT 위원회 활동 및 주요 국가들과의 공조를 통하여 기술규제로 인한 기업의 불이익을 최소화 시켜왔다.

이날 설명회에서 기술표준원 기술표준정책국 최형기 국장은, "최근 세계 각국은 경제 위기와 함께 환경규제 및 기술규제를 늘려가고 있으며, 이는 WTO/TBT 위원회가 회원국들로부터 기술규제의 제·개정 정보를 받아 발표하는 TBT 통보문의 개수만 보아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인사말로 시작하였고, (올해 1/4분기에 발표된 TBT 통보문건 수가 27% 이상 증가.)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지난해 9월 TBT 중앙사무국을 개소하고 그간 추진해 오던 무역기술장벽 대응업무를 확대 강화한 바 있으며, WTO를 통해 입수한 무역기술장벽 통보문을 분석하고 관련 업계에 전달할 전문가 조직을 분야별로 구성하였으며, TBT 포털사이트를 개설·운영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TBT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고 문제점을 해결하

고 있다.”고 기술표준원의 자속적인 노력을 당부하였다. 첫 연제로서 유럽 환경규제의 최신 변동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한 정우선 박사는, 새로이 시작되는 EUP(에너지 사용제품)에 대한 지침에서 에코디자인 즉 친환경 제품설계 의무를 요구하는데 EU에 20만대 이상 판매하는 다음 세 가지 제품군(운송 수단 제외)이 이에 포함된다고 하였다.

- 1. 제품 작동을 위해 에너지원전기, 화석연료, 재생연료)을 사용하는 제품**
- 2. 에너지를 생산, 변환 또는 측정하는 제품**
- 3. 시장 거래되고 에너지 사용제품에 합체되는 부품으로, 단독 환경성 평가 가능한 것**

따라서 상기 제품 제조자는 제품을 시장에 출시 또는 서비스하기 전에 제품의 적합성 평가를 수행하고 CE 마크를 부착한 후 적합성 선언을 하여야 한다. 또한 RoHS의 최근 개정안(‘08.7.1)에서는 이 전 규제에서 제외한 deca-BDE를 예외 조항에서 철회하기로 한 결정에 따라, 이제부터는 검토 대상에 추가된다고 밝혔다. 범위가 확대된 부분은 의료 장비로서, 이는 2014년부터 적용되며 국가 안보관련 제품도 포함되고, DEHP, BBP, DBP 등 PVC용 가소제와 Hexabromocyclododecane 난연제도 검토 대상에 추가된다 고 하였다.

유일재 교수는, 미국 환경청(EPA)이 탄소 나노튜브를 신규 화학물질로 취급하기로 결정하고 사전 제조신고(Pre-manufacture notice, PMN)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유럽의 ETUC(유럽무역노동조합연합)에서는 나노 기술의 책임 있는 개발을 요구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 확보를 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실시하며, 또한 나노 물질을 REACH로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프랑스는 입법을 검토 중인 법안에 나노 물질이나 나노 입자를 함유한 생체의 제조, 수입, 판매자는 사용량과 용도를 정부, 소비자 및 대중에게 공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일본의 환경성 역시 지난 3월 나노 물질 환경위해성을 저감하기 위한 환경 배출 지침을 발표했으며, 보건노동성은 이미 지난해 나노 물질 취급 작업안전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유 교수는 “나노 제품의 생산, 소비, 폐기기에 이르는 전 생애 주기에 걸친 관리 지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무역 대상국의 나노 물질 유해성자료, 물질 안전보건자료 요구나 향후 예상되는 표시제도 등에 대한 규제대응을 위해 정부 주도의 전략수립과 예산



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기술규제대응과장은 Economist紙에서 논의된 바대로, 세계적으로 생산 거점이 다각화되고 국제적 분업체제가 강화됨에 따라 각국별로 취하고 있는 각종 비관세 장벽조치 즉 기술규제들이 국제교역에 미치는 영향이 증폭되어 나타난다고 설명하였다. 즉, IT제품에 ‘미국-EU간 기술규제가 관세율 6%와 동등한 효과를 갖는다’는 John Wilson의 ‘96년도 분석 결과를 적용하여 6개국간 분업을 통해 완성된다고 가정하면, 최종적으로 기업에 떨어지는 부담은 1.06의 6승, 즉 1.42가 된다. 이는 기존 체제에서보다 42%의 비용 부담을 추가적으로 가져오는 결과가 된다고 설명하였다.



4.1.4 중국 정보보안제품 인증제도 설명회

‘07년 8월 중국의 정보보안제품에 대한 인증시행의 WTO 통보를 시작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으로부터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국가 안전에 필요한 부분에만 시행할 것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왔다. 이와 관련, 국내 정보보안제품 관련 이해관계자의 우려를 반영하여 두차례의 한중적합 소위(‘08.11, ‘09.7)를 통해 우리업계의 우려를 전달하였으며, ‘09.5.11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방문(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과장), ‘09.5.18일 일본 경산성 방문(지경부 무역투자실장) 등의 양자 공조 노력, WTO/TBT위원회 참여에서의 다자적 활동 등을 통해 관련 규제의 시행연기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또한 동 인증제도의 모호한 부분 등을 구체적으로 다루어 국내 업계가 인증에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중국 규제담당자와 대중 수출기업을 초청하여 중국강제인증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는 중국규제담당자들과 우리기업자들 간 상호 이해, 의문점 해소를 목표로 중국의 강제인증제도의 전반적 설명과 함께 CCC강제인증제도의 현황과 미래, 정보보안제품인증제도와 정보보안인증시스템 전반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기업들이 궁금한 점을 직접 질문하고 응답받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는 또 한 중국규제소관기관인 CNCA와 정보보안제품 강제인증제도 담당이 직접 참가하여 규제제도를 설명하고 기업질의에 응답하였다는 것에 의의를 둘 수 있다.

※ 각각 CNCA(중국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인증인가 업무의 관리감독) 기술총감독 LIU Weijun, ISCCC 규제담당과장 Bu Ning 등 4명의 규제담당자 참가

이를 통해 중국강제인증제도에 대한 우리기업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중국측 규제자와 우리기업 간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4.2 포털사이트

전통적인 무역장벽인 관세나 수입수량제한 등이 감축 또는 철폐되어 가고 있는 반면에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 등과 같은 비관세장벽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의 세계 경제위기에 따라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인 기술장벽이 높아져가고 있으며, 이는 WTO에 통보되는 TBT 통보문의 수만 보아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는 해외기술규제 정보를 신속하게 입수하여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시되어야 한다. 이에 2008년 9월 업계 및 관련기관들에 게 신속하고 시의적절하게 무역기술장벽을 배포하고자 TBT 중앙사무국 개소와 더불어 TBT 포털사이트를 개통하였다. (<http://knowtbt.kr>) 특히, 고객맞춤형 자동경보시스템을 도입하여, 가입고객 누구에게나 분야별, 관심별로 나누어 고객이 요구하는 TBT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고 있다.

현재 자동경보시스템에 가입한 가입자수는 8,268명이며, 총방문자수는 약 204,081명에 이르고 있다.
(2010.4월현재)



〈TBT 포털사이트 초기화면〉

4.3 TBT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글로벌 경기침체를 계기로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조치의 확대가 우려되는 가운데 관세조치를 이용한 자국 산업보호보다는 비관세조치를 이용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수출제품에 대한 기술규제도 양적, 질적으로 급증하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다.



※ 09년 상반기 국가별 총 통보문 수는 작년 동기대비
33.6% 증가된 787건

※ 기술규제사례 : 완구안전검사(미국), 가전제품 적정수
명 라벨링(일본), 공산품검사제도(사우디/에콰도르),
철강재 인증의무화(인도네시아/인도/태국 등) 등

현재 우리의 경우 신규 기술규제정보 입수는 WTO의 TBT(무역기술장벽) 사무국이 발행하는 국가별 TBT 통보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모든 나라가 자국의 기술규제 제개정사항을 WTO에 잘 통보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때로는 선적후 문제가 발생한 후에야 기업을 통해 규제정보를 입수하기도 한다.

※ 우리경우 '08년 제정된 기술 규제 중 73%('08년 각 부처 제정규제 123건 중 90건)를 통보하지 않음

※ 최근 신흥시장국가(에콰도르, 사우디, 태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에서 WTO 미통보 규제가 연속적으로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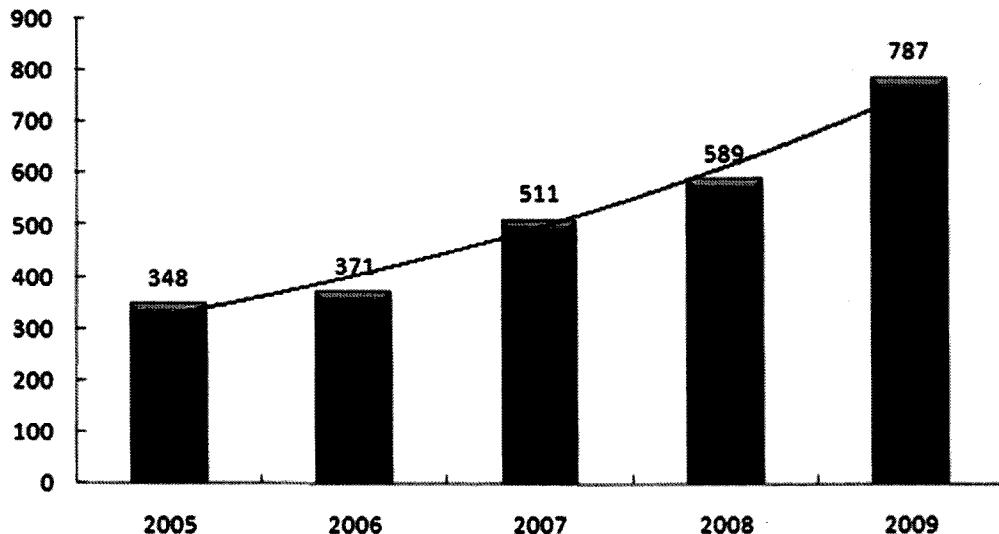


기술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표준 및 기준의 전문입수, 절차 및 관련기관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해외 기술규제정보의 신속하고 정확한 입수 및 대응을 위해 해외에서 활동중인 우리 공관·공기업·기업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대응하는 방법을 고안중이다. 외국의 기술규제 제·개정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이다. 그렇지 못하다면 차선책으로 해외기업과 유사한 시점에 기술규제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면 수출기업이 대응하는데 조금이나마 애로를 덜어 줄 수 있을 것이다. 규제정보의 입수를 시작으로 규제정보에 대응을 위한 분석 작업 및 적용을 위한 준비기간 등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V. 중앙사무국 1년

5.1 무역기술장벽의 최신동향

'07년 중반부터 시작된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 각국이 보호무역조치의 도입을 배격하고는 있으나 실제로는 자국시장 보호를 위해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보호무역적 성격을 갖는 기술규제가 특히 증가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자료에 따르면 153 개 회원국이 '09년 상반기중에 발표한 기술규제 수는 총 787건으로 작년의 같은 기간에 비해 33.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년도별 상반기 WTO/TBT 통보문수〉

기술규제의 증가에서 주목하여야 할 부분은 개도국들에 의한 조치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09년 7년 1일 WTO의 파스칼라미 사무총장이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09년 1월~5월간 보고된 기술규제 중 개도국의 것이 80% 이상을 차지했는데,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개도국의 비중이 60% 미만이었던 것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이다. 최근에 WTO를 통해 발표된 기술규제의 국가별 통계를 보더라도 중국이 156건으로 가장 많은 통보문을 발행하였고, 바레인, 사우디,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오만, 쿠웨이트, 이스라엘 등 개도국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점이 나타난다.

〈주요 국가별 TBT 통보건 수〉

국가	중국	이스라엘	바레인	EU	사우디	카타르	미국	기타	합계
통보건수	156건	69건	53건	45건	44건	43건	40건	337건	787건

또한 WTO에 통보된 국가별 기술규제 통보문을 기술분야별로 보면 식의약품 분야에서 275건으로 가장 많으며 이는 전년의 128건보다 214% 급증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에너지 효율, 에코디자인, 환경 규제 등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분야별 TBT 통보건수〉

품목	건수	비율(%)
식의약품	275	34%
전기전자	144	18%
화학	97	12%
기계	51	6%
수송물류	47	6%
생활용품	37	4%
규제제도	27	3%

품목	건수	비율(%)
건설	25	3%
에너지	24	3%
바이오환경	23	3%
소재나노	21	2%
정보디지털	11	1%
농수산물	5	0.6%
합계	787	100%

기술규제가 늘어나고 강화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무역분쟁 역시 늘어나고 있는데, WTO/TBT 위원회에서 특정 국가의 기술규제에 대한 여타 국가의 이의제기를 의제화한 특정무역현안(specific trade concerns)의 건수가 '08년 59건에서 '09년 74건으로 증가하였다.

〈최근 WTO/TBT 위원회의 특정무역현안 건수〉

년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현안(건)	31	28	37	45	59	74

5.2 우리나라 무역에 대한 영향

우리나라에게는 경기 회복에 대한 최근의 기대가 상반기 중 지속된 무역흑자 기조에 힘입은 바 크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세계적 경제위기 상황을 타개하는데 있어 수출 확대가 매우 긴요하다. 실제로 최근 무역협회가 발표한 「09년 하반기 수출전망」 보고서는 올해 우리나라의 수출규모가 3,560억 달러로서 세계 9위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였는데 이는 지난 1985년(수출 10위) 이후 최고의 성과다. 이에 따라 '08년 우리 경제의 대외의존도는 90.5%로 전년도(75.1%)에 비해 15% 가량 상승하였다.

※ 대외의존도 : 61.3% ('03년) → 75.1% ('07년) → 90.5% ('08년)

수출 분야에서 우리가 거두고 있는 또 하나의 성과는 수출지역의 다변화인데, 올해에 들어서서는 개도국에 대한 우리의 수출이 7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4년간 대개도국 수출의 비중 변화〉

연도	2005	2006	2007	2008
선진국	40.1%	37.5%	34.1%	31.1%
개도국	59.9%	62.5%	65.9%	68.9%

문제는 최근 확산, 강화되고 있는 각국의 기술규제들이 우리의 수출확대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효과이다. 특히 개도국들에 대한 수출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들 국가들이 자국산업보호를 목적으로 무역기술장벽을 높드리우는 것은 기업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5.3 우리의 대응 방향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세계적으로 처한 경제위기에 따라 기술규제를 통한 보호무역 조치의 확산 징兆가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정부와 산업계의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우리 정부에서는 G-20 공동의장국으로서 보호주의 흐름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여 왔다.

신규 기술규제를 해당기업에게 맞춤형으로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대응능력을 높이고, 기존 규제에 대하여는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 운영함에 따라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지원하며, 아울러 현장점검반도 가동하여 주기적으로 애로사항을 점검한다. 또한, 첨단 검색기능을 구현하는 포털사이트(<http://knowtbt.kr>)를 운영하여 수출업체에 관련 해외 기술규제 및 TBT 통보문을 실시간으로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외 기술규제 정보 수집과 동향분석은 정부의 업무로만 한정지어서 볼 문제가 아니다. 각 기업 및 관계기관은 수출국 정부 및 지사로부터 얻은 최근 정보를 정부와 공유하고, TBT 중앙사무국과 협조하여 국가차원의 대응방안을 만들도록 하여야 한다. 기업과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기술규제의 장벽을 넘어 보다 넓고 다양한 해외시장을 개척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기업 스스로가 각국의 기술규제를 예의주시하고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정부는 새로운 기술규제의 상대국에 이의제기, 시행 연기, 상호인정협정 및 각종 협상 등 외교적인 노력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다시 한번 우리의 무역을 확대하기 위한 해외 기술규제 대응에는 정부의 역할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무역관련 기관과 기업들, 특히 해외 현지에 파견된 주재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중요함을 강조해 본다. 정부도 사안별로 개별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체계적,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범국가적 종합 대응시스템을 마련하는데 주력해야 할 때다.

